

의안번호	제 833 호
의 결 연 월 일	2025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안

발 의 자	안치영 의원 등 8인
발의연월일	2025년 1월 10일

충청북도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안

(안치영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33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5년 1월 10일

발 의 자 : 안치영, 최정훈, 안지윤,
김국기, 박재주, 오영탁,
조성태, 박병천

1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·봉사하는 청년새마을연합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청년새마을연합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(안 제3조).
- 청년새마을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4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, 「지방자치법」
- 나. 관련부서 : 행정국 도민소통과
- 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- 라. 조례안예고 : 예고대상(의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)

제 호

충청북도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·봉사하는 청년새마을연합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청년새마을연합회”란 새마을운동중앙회 산하의 충청북도새마을회 청년새마을연합회를 말한다.

제3조(지원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청년새마을연합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새마을운동의 계승·발전을 위한 청년새마을사업
2. 청년새마을연합회의 새마을운동 활동을 위한 사업
3. 그 밖에 도지사가 새마을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4조(협력체계 구축) 도지사는 청년새마을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, 법인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5조(포상) 도지사는 청년새마을연합회의 활동으로 새마을운동 및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발췌

□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·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·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새마을운동조직”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,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, 직장·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, 새마을문고중앙회,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.

제3조(출연금의 지급 등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③ 개인·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운영 재원(財源)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.

④ 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 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, 보조금, 기부금의 사용·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비용추계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 제1호

○ 주요조문

제3조(지원) 충청북도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청년새마을연합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새마을운동의 계승·발전을 위한 청년새마을사업
2. 청년새마을연합회의 새마을운동 활동을 위한 사업
3. 그 밖에 도지사가 새마을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4조(협력체계 구축) 도지사는 청년새마을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, 법인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○ 비용 발생 요인

- 조례 제정으로 인한 직접적인 비용 발생 없음

○ 사 유

- 본 제정조례안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우며 해당 조례안으로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